# 부조급여 지급

# 1 기본 현황

### 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	
사업기간	☑연례반복			
사업내용	○ 공무원 및 배우자의 주택소실·유실·파괴로 인한 손해발생시 또는 공무원 본인 및배우자 등 가족 사망시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부조적 차원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			
사업비	2,200,000천원 (국비)	[시비]2,200,000천원		
(당해년도)	기타 (예산 외) 〔구비〕	[기타]		

# 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행정국	인력개발과	김현중 2133-5750	김경섭 2133-5770	장서윤 2133-5772

<sup>※</sup>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# 2 예 산 설 명

### □ 예산 총괄

□ 에인 공달	(단위 : 천원, %)			
구 분	2019예산액 (A)	2020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	(x-)	(x-)	(x-)
	2,100,000	2,200,000	100,000	4
연금지급금	(x-)	(x-)	(x-)	(x-)
	2,100,000	2,200,000	100,000	4

## 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		
	○ 부조급여(재난부조금, 사망조위금)	=	2,200,000천원
연금지급금	- 가족사망 3,445,000원*600명	=	2,067,000천원
	- 본인사망 10,000,000원*12명	=	120,000천원
	- 재난부조금 13,000,000원*1건	=	13,000천원

## 3 사 업 설 명

#### □ 사업목적

○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실,유실,파괴 또는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등의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금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

#### 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 -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2조. 제43조
  -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, 제53조, 제54조

### □ 사업내용

- 지원대상
  - 재난부조금 : 공무원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화재, 홍수, 호우, 폭설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이 소실·유실·파괴되어 손해를 입은 때
  - 사망조위금 :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나 부모(배우자의 부모 포함) 또는 자녀 사망시
- 지급금액
  - 재난부조금 : 피해정도에 따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.3 ~ 3.9배까지 지급
  - 사망조위금 : 본인 사망 시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,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(배우자의 부모포함) 또는 자녀사망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
- '20년도 소요예산(안) : 2,200,000천원

### □ 2020년도 추진일정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2,200,000	
서류 및 자격 심사	2020.01~2020.12		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서류 심사
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	2020.01~2020.12	2,200,000	매월 사망조위금 지급

# 4 사업효과

#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7년도	○ 사망조위금 : 581명 1,944,761천원 ┏ 본인사망 : 17명 172,426천원 ┗ 가족사망 : 564명 1,772,335천원
2018년도	○ 사망조위금 : 603명 2,081,292천원 ┏ 본인사망 : 10명 113,033천원 ┗ 가족사망 : 593명 1,968,259천원
2019년도	○ 사망조위금 : 336명 1,214,456천원(6월말 지급신청 기준) ┏ 본인사망 : 10명 108,033천원 ┗ 가족사망 : 326명 1,106,423천원

### □ 향후 기대효과

○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

#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(<u>단위</u> : 천원)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----	------	------	------	------	-----	------	------

2016	(x-) 2,000,000	(x-)	(x-)	(x-) 2,000,000	(x-) 1,956,781	(x-)	(x-) 43,219
2017	(x-) 2,100,000	(x-)	(x-)	(x-) 2,100,000	(x-) 1,944,761	( <sub>X</sub> -)	( <sub>X</sub> -) 155,239
2018	(x-) 2,100,000	(x-)	(x-)	(x-) 2,100,000	(x-) 2,081,292	(x-)	( <sub>X</sub> -) 18,708